

☆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6월 07일로 LI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◎ 보험기간 :  | 2010년 6월 7일 00:00 부터 2011년 6월 6일 24:00 까지(1년간) |
| ◎ 보험계약자 : | 공주시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◎ 피보험자 :  |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공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전체                     |
| ◎ 수익자 :   | 피보험자 본인 (사망시 법정상속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**보장내용**

- 1. **자전거 사망, 후유장애** : 보험기간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(3%~100%)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**후유장애시 사망 25,000,000원 750,000~25,000,000원**  
(15세 미만자 사망제외)
- 2. **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** :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**진단4주이상 ~ 6주미만 : 20만원**  
진단일에 따라 지급 (최초 진단기준, 1회에 한해 지급) **진단6주이상 ~ 8주미만 : 30만원**  
**진단8주이상 : 40만원**  
**※ 단, 8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15만원 지급**
- 3. **자전거사고 벌금** :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**20,000,000원**  
1사고당 2,00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
- 4. **자전거사고 방어비용** :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 **1,000,000원**  
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
- 5. **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** :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 및 동승자제외)을 사상케 한 **30,000,000원**  
경우 피해자 1인당 3,000만원 한도 내 형사합의금 실비보상

※ 자전거사고란? 1.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
2.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나 사고  
3.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.

※ 자전거란? - 도로교통법 제2조(정의)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.

◎약관의 내용과 본 안내서가상이할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.

**※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**

- 1. 공통서류 :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사본, 주민등록등(초)본, 교통사고관련서류(경찰서신고서류 등), 초진진료차트, 입퇴원확인서  
피보험자(또는 법정상속인) 명의의 통장사본,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: 위임장
- 2. 후유장애 : 장해진단서(입원 또는 치료병원), 다만 운동장애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
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 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
- 3. 기타 필요서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

보험금 관련 서류 및 기타 문의는 아래 **단체보험콜센터**를 통하여 주시면 됩니다.  
Tel : 1544-1616 (안내가 나온후 2번 누르시면 상담원 연결됩니다)  
Fax : 0505)136-7924



